

# 美國 通商政策의 論理와 展望에 관한 小考

崔 宗 淳\* · 崔 永 坤\*\*

## 〈目 次〉

I. 序論	IV. 美國 通商政策의 展望
II. 美國 通商政策의 論理	1. UR 妥結에 따른 通商政策의 展望
1. 保護貿易主義	2. APEC 形成에 따른 通商政策의 展望
2. 相互主義와 公正貿易	3. NAFTA 結成에 따른 通商政策의 展望
3. 二國間主義의 擴大	
III. 美國 通商政策의 主要 規制措置	V. 結論
1. 不公正 規制措置	
2. 一方的 規制措置 (通商法 301條 中心)	

## I. 序 論

만성적인 貿易赤字에 직면한 美國은 對外貿易不均衡을 해소하는 데 있어 自國의 產業構造改善을 통한 國際競爭力 회復보다는 貿易相對國, 특히 對美貿易黑字國들의 輸入障壁과 不公正한 貿易慣行에 起因됨을 주요 이유로 삼아 通商政策의 基調를 自由貿易 追求에서 相互主義에 입각한 公正貿易秩序 追求로 전환해 왔다.

\* 本 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經濟學博士(經濟學)

\*\* 本 大學校 講師

義에 입각한 公正貿易秩序 追求로 전환해 왔다.

특히 클린턴行政府 出帆 以後 美國의 通商政策은 公正貿易의一方的 性格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는데, 美·日間 通商協商에서 보여지는 結果志向 管理貿易政策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유롭지만公正한 貿易(open but fair trade)”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經濟的利益의伸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넓은 意味에서 보면 美國의 通商政策은 한쪽에서는 商品의 國際競爭力を 向上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外國市場開放을 노리고 두 가지 basic方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U·R의 타결에 따라 自由貿易主義라는一般的 貿易規範에 대한 세계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의 추구와 美國의 對外不均衡의 확대는 向後 美國通商秩序의 앞날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하에 本稿에서는 戰後 GATT體系가 약화되고 地域主義, 新相互主義가 강화되는 가운데 美國의 通商政策의 論理와 美國通商政策의 制限措置를 中心으로 살펴본 후, U·R의妥結, APEC의 形成, NAFTA의 結成後 美국의 통상정책의 展望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美國 通商政策의 論理

### 1. 保護貿易主義

第2次大戰後 美國은 絶對優位의 經濟力과 國際經濟力を 背景으로 世界經濟에 있어서 지도적인 地位를 확보하여 世界貿易의 自由化를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1960年代 이후 EC와 日本 그리고 NICs의 급속한 經濟成長으로 美國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따라서 1970年代에 들어와서 美國은 世界經濟의 지도적인 위치를 상실하자 自由貿易을 기치로 하는 世界經濟는 多極化 傾向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多極化 현상으로 인하여 美國은 國際貿易의 自由化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EC와 日本의 對外貿易의 急伸張으로부터 自國市場을 保護하기 위한 새로운 保護貿易主義의 傾向<sup>1)</sup>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美國은 1980年代부터 막대한 貿易赤字를 계속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原因은 交易相對國들의 不公正한 貿易慣行 또는 國際收支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債務開途國, 產由國들의 인위적인 輸入抑制 등도 美國의 對外輸出을 위축시켜 貿易赤字를 확대시키는 일부 要因이 되기는 하나 美國內의 巨示經濟的 要因에 비한다면 그 效果는 相對的으로 미약한 것으로

1) 張石煥, WTO時代와 우리의 대응, 「關稅」3月, 韓國關稅研究所, 1994, pp. 16~17.

평가되고 있다. 1980年代 이후 美國의 貿易收支赤字의 급속한 확대는 國內支出의 증가가 國內生產의 증가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주요 交易國의 國內需要增加에 비해 美國의 國內需要가 크게 增加했기 때문이다. 生產 및 所得水準에 비해 相對的으로 높은 美國의 支出增加는 總貯蓄과 總投資의 不均衡을 가져왔는 데 이러한 不均衡은 聯邦財政赤字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1980年부터 1985年 初까지 달러貨의 급격한 評價切上 그리고 그 이후 달러貨의 弱勢反轉 이후 J커브效果는 美國의 貿易赤字의 가장 直接的이고도 重要한 要因이지만 換率變動은 財政·金融政策, 景氣變動 등 巨示經濟의 要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sup>2)</sup>

그러나 美國은 自國의 貿易赤字의 지속은 근본적으로 自由貿易으로 인한 競爭力弱化에 있다고 보고 保護貿易을 強化하며 關稅나 퀴타보다는 非關稅障壁 즉 輸出自律規制(VER)를 선호하였다.<sup>3)</sup> 왜냐하면 輸出自律規制는 퀴타나 關稅보다는 貿易相對國들의 반발이 적으면서도 國內의 보호무역압력을 무마시킬 수 있는 手段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 2. 相互主義와 公正貿易

美國을 포함한 先進國은 종래의 保護貿易主義強化와 더불어 1980年代 이후에는 輸出增大, 通商交涉 強化 均衡換率의 維持, 貿易調整 등 貿易懸案課題의 解決을 위하여 特定產業에서의 산발적인 輸入規制措置보다는 自由貿易에 상응한 市場開放을 外國에 요구하는 相互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相互主義(reciprocity)는 時代에 따라 그 定義는 差異가 있으나, 대체로 國家間에 通商條約을 체결하거나 또는 기타의 通商政策을 實行하는데 있어서 締約國이 相互通商上 均等한 이익을 交換하려는 通商政策上의 主義로서 定義<sup>5)</sup>될 수 있다. 또한 GATT의 規定에 나타난 相互主義原則은 넓은 意味에서는 어떤 國家가 다른 國家에 혜택을 줄 경우 동등한 혜택을 다른 모든 나라에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最近 美國을 포함한 先進國들이 사용하고 있는 相互主義原則은 좁은 意味에서 自國이 貿易相對國에 提供하는 것과 동등한 市場接近과 投資機會를 自國에 提供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相互主義原則은 GATT의 最惠國待遇(Most-Favoured- Nation Treatment)原則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代表的인 예로는 外國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한 報復措置를 규정한 美國의 通商法 301條와 더욱 강화된 Super 301條를 들 수 있다.

1982年 以後 美議會에서는 1974年 通商法 301條의 「外國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한 對抗

2) 産業研究院, KIET 通商白書, 서울, 1988. 7, pp. 15~16.

3) 金煉錫, 美國貿易의 政治經濟學과 韓國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88, pp. 24~32.

4) 盧永旭, 美國의 通商政策方向과 우리의 對應方案, 「關稅」 6月, 韓國關稅研究所, 1993, pp. 14~15.

5) W. R. Cline, "Reciprocity : A New Approach to World Trade for Int'l Economics," Washington, 1983.

措置」 항목에 대한 改定案으로서 相互主義 法案들의 提出<sup>6)</sup>이 늘어나고 있으며, 最近에는 通信機器, 서서비스産業, 知的財産權에 있어서도 相互主義를 요구하는 法案<sup>7)</sup> 속출하고 있다.

相互主義의 대두와 더불어 主要先進國의 世界貿易秩序에 대한 기본이념은 公正貿易 또는 管理貿易으로 轉換되고 있다. 이는 진정한 自由貿易의 實현을 위해서는 相互公正한 競爭機會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行爲를 規制하기 위해 自由貿易 自體를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理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무역이념은 主要先進國의 通商政策에 반영되어 구체화되고 있다.

美國의 公正貿易論은 1971年 낙순쇼크 이후 대두하기 시작하여 1974년 通商法에 반영되었고 또한 최근에 개정된 Super 301條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즉 美國의 公正貿易論은 美國이 自由貿易主義에 입각하여 自國市場을 開放한데 반해 여타 貿易相對國들이 各種 貿易障壁을 쌓고 있어 결과적으로 美國은 不公正하고 不平等한 競爭을 강요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美國의 通商政策은 덤핑·補助金支給 등 外國의 不公正貿易慣行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相互主義立場에서 相對國의 市場開放을 강요하고, 對外報復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對外攻勢로 轉換되고 있다.

### 3. 二國間主義의 擴大

최근들어 美國을 위시한 主要先進國들간에 擴散되고 있는 二國間主義는前述한 相互主義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相互主義를 國際貿易上 權利와 義務의 均衡을 要求하는 包括的 原則으로 본다면, 二國間主義는 貿易問題 解決方式으로서相互主義原則을 구현하기 위한 具體的 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雙務主義 혹은 二國間主義(bilateralism)가 貿易協商에서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協商交涉力이 강한 나라의 일방적 강요와 協商交涉力이 대등한 國家間의相互主義에 의해 自國의 利益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國際的인 貿易問題를 二國間에 政治的으로 解決하는 方式은 1950~60年代에도 물론 存在했으나, 1970年代 以後 더욱 강화되어 GATT의 多者間主義와 二國間主義는 혼재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GATT는 점차 自國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交涉의 場으로 惡用되고 있다. 즉, 最近 美國을 포함한 先進國들이 GATT의 原則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그 이면에서는 政府介入에 의한 雙務的, 二國間 交涉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二國間主義는 EC성립을 시작으로 각종 自由貿易地域, 特惠協定 등이 GATT 내에

6) 盧承一, 美國의 通商關稅法 解說, 產業研究院, 1985, p. 78.

7) 蔡旭, 美國의 新通商政策과 企業의 對應方案, 大韓商工會議所, 1994, p. 41.

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으며, 최근 美國이 中美·카리브地域, 이스라엘, 캐나다에 이어 ASEAN, 日本 등과의 自由貿易協定(FTA : Free Trade Area) 締結을 시도함에 따라 더욱 擴散되고 있다. 원래 GATT는 無差別原則의例外規定으로서 關稅同盟과 自由貿易地域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베네룩스 3국과 같은 小國을 상정한 것이며, 美國과 같은 大國이 규정을 이용하여 自由貿易協定을 정당화하는 것은 GATT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美國의 二國間主義를 제창하고 있는 것은 우루구아이 라운드 協商이 타결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貿易自由化가 진전된 특정국가들간에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고 여기에 여타 국가들의 參與幅을 넓혀 나가는 것이 貿易自由化를 위한 현실적인 方案이라는데 論據를 두고 있다. 이러한 雙務的 自由貿易協定의 締結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美行政府와 議會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1985年 新通商政策에서 美行政府는 「二國間交涉은 多者間交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雙務的 貿易協定은 多者間 協商努力을 보완하고 世界貿易의 自由化를 보다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의회는 行政府에 대해 雙務的 貿易協商權을 부여했다.

二國間主義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輸出自律規制協定(VER), 市場秩序特約協定(OMA) 등의<sup>8)</sup> 雙務協定과 反dumping·相計關稅賦課와 같은 雙務的 輸入規制, 相互主義에 입각한 雙務的 市場開放壓力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對象分野는 철강, 자동차에서부터 반도체, 농산물, 공작기계분야까지 擴散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東西貿易과 產油國을 비롯한 開途國貿易에서 날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求償貿易(Compensate Trade)<sup>9)</sup>은 그 자체가 차별적인 雙務主義의 性格을 지니고 있어 多者間主義를 지향하는 GATT정신과 상충된다. 구상무역의 擴大는 1次產品의 價格의 弱勢와 外債問題 등으로 外貨不足에 직면하고 있는 開途國의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貿易을 擴大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雙務主義의 傾向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二國間主義의 擴散은 世界經濟의 블럭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世界貿의 發展을 저해하고 自由貿易體制를 위협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 OECD를 중심으로 二國間主義의 擴散을 저지하기 위해 相互監視制度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OECD 貿易委員會는 최근 二國間主義의 擴散을 막기 위해 각국의 通商貿易政策의 背景이 되고 있는 產業構造, 商慣行, 經濟구조 조정정책 등을 통하여 상호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OECD 貿易委員會가 구상중인 相互監視制度는 각국의 貿易政策은 물론 貿易政策에 영향을 미치는 流通構造, 企業그룹, 尖端産業 育成措置, 傳統企業의 構造轉換政策, 輸出入支援政策 등이 감시대상이다. 이 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될

8) “市場秩序特約協定”은 輸入國政府가 直接介入하여 수량제한 뿐만 아니라 反dumping 규제조치도 병행되기 쉽다는 점에서 VER과 차이가 있다.

9) 梁啖換·吳元奭, 貿易商務論, 法文社, 1993, p. 48.

경우 최근 美·日 貿易 摩擦의 직접적인 原因이 되고 있는 美·日 半導體協定의 實效성 및 GATT 위배 여부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III. 美國 通商政策의 主要 規制措置

美國은 日本, EU, ANICS와의 경쟁과정에서 主要 產業部門의 國際競爭力이 현저하게 弱化되면서 輸入規制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輸入規制는 여러 形태가 있으나 貿易去來의 公正化를 촉진하기 위한 市場메카니즘 회복을 目的으로한 不公正輸入規制措置가 있고 다른 하나는 市場開放을 위한 일방적 輸入規制措置가 있다.<sup>10)</sup> 前者は 反dumping 관세, 相計關稅, 緊急輸入規制(safeguard) 등이 있으며, 특히 이들은 WTO 규정상 합치는 것이 특징이다.<sup>11)</sup> 後者는 代表的으로 통상법 301條 등을 들 수 있다.

#### 1. 不公正 規制措置

##### (1) 反dumping 關稅

反dumping 關稅(Anti-Dumping Duties)라 함<sup>12)</sup>은 특정한 輸入品이 公正價格以下(Less Than Fair Value : LTFV)로 판매되어 그로 인하여 관련 미국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덤픽차액 만큼의 보복관세를 賦課함으로써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輸入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公正價格」 이하라고 하는 것은 輸入品의 生產國에서의 價格보다 美國內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의미한다.<sup>13)</sup>

美國의 反dumping 關稅는 GATT協約 第6條와 그 부속협약인 反dumping憲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1984年 通商關稅法에서는 ① 덤픽에 관한 調査節次를 간소화하고, ② 反dumping法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③ 덤픽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反dumping 關稅의 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反dumping 關稅를 賦課하는 機關은 商務省과 ITC이다. 상무성은 國際貿易管理局에서 덤픽을 조사하고 덤픽행위가 판정되면 덤픽차액을 결정한다. 한편 ITC는 상무성의 덤픽판정

10) 金正會, 美國 通商政策의 牯權論의 接近, 國際貿易研究所, 1994, pp. 13~14.

11) 產業研究院, 21세기 世界貿易經營戰略, KIET 연구보고서, 1994, pp. 4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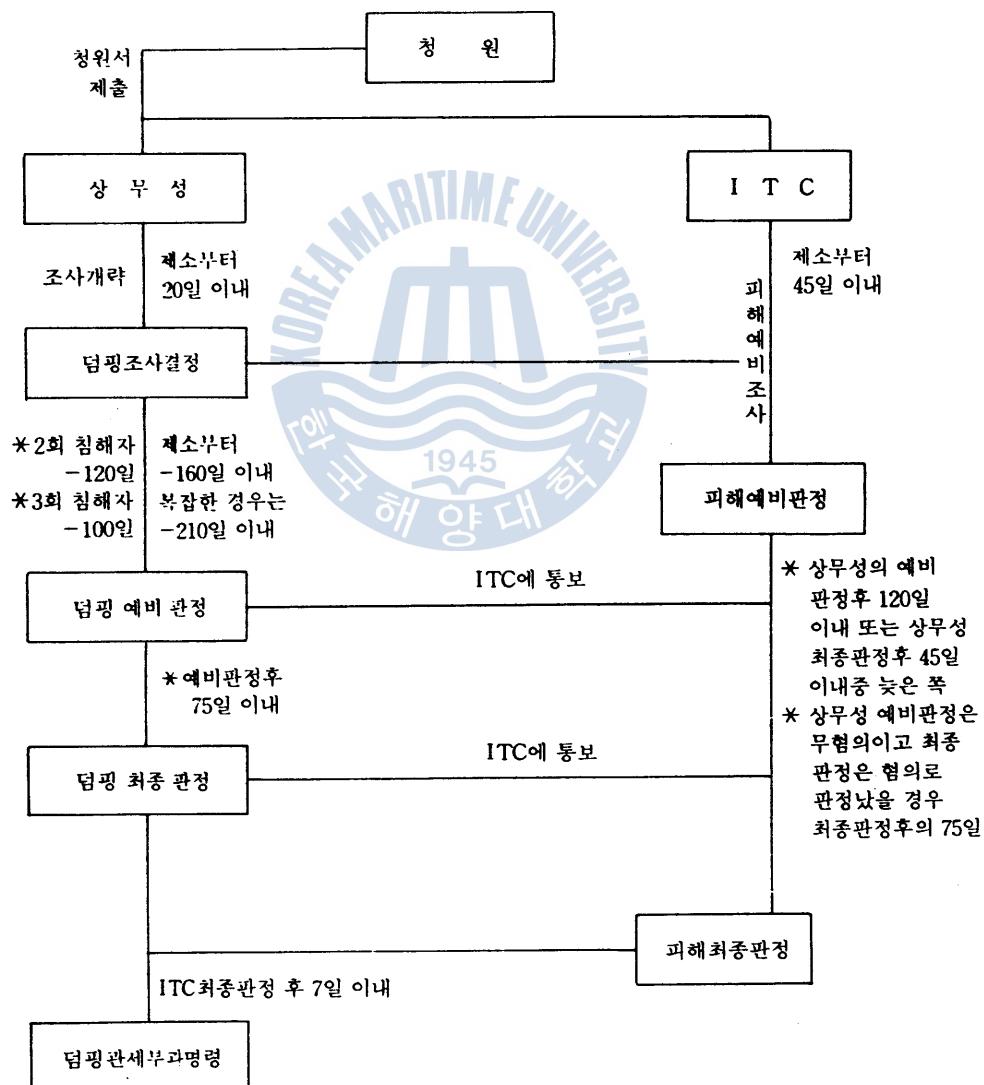
12) 申鉉種, 貿易政策論, 博英社, 1993, pp. 484~487.

13) 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XVI and XXIII of the GATT, H. R. Doc. No. 96~153, Part 1 96th Cong. 1st Sess 257 (1979).

에 의거하여 그 物品이 倾銷輸入됨으로써 國內產業이 받은 實質적 피해나 위협 또는 國내 해당산업의 질서 확립의, 實質적 저해 등을 결정한다.

또한 反傾銷關稅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첫째, 倾銷事實이 확인되어야 하고 둘째, 美國產業이 實質적인 被害를 입어야 하고 셋째, 法이 요구하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1 참조>

<그림-1> 미국의 반倾銷 조사 절차



## (2) 相計關稅

相計關稅(countervailing duties)란 外國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輸出補助金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서 수입되어 國內產業에 피해를 입힐 경우 그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關稅를 말한다.<sup>14)</sup>

相計關稅에 관한 美國法은 反dumping法과 마찬가지로 GATT의 第6條와 그 부속현장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1984年 및 1988년 일부 수정되었다.

相界關稅 부과명령이 발동되려면 補助金支給事實과 그 범위에 대한 商務省의 판정이 있어야 함은 앞의 덤플의 경우와 같지만 그로 인하여 관련 미국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것은 상대국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sup>15)</sup> 만일 문제가 된商品의 輸出國이 GATT의 補助金憲章의 수용국이거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쌍무협정을 미국과 체결 하였거나 또는 GATT會員國으로서 美國의 一般特惠關稅의 혜택을 받는 국가인 경우에는 보조금지급 외에 피해 여부도 판정되어야 相計關稅가 부과되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는 보조금지급事實만 확인되면 그로 인하여 美國產業이 피해를 입었느냐에 관계없이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상계관세부과 명령 절차는 反dumping 관세와 유사하다.

## (3) 緊急輸入制限措置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란 넓게 해석하면 國際收支를 방어하고 國內產業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貿易制度의 장치를 말한다.<sup>16)</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特定商品의 수입금증이 輸入國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國內競爭產業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기존 GATT 19條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加盟國의 대응조치를 意味한다.<sup>17)</sup>

따라서 緊急輸入制限措置란 美國으로 수입되는 특정 상품의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미국내 競爭產業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ITC가 판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輸入品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조정을 하고 經濟·社會的 便益을 제공하여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노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措置를 말한다.

그리고 輸出國의 企業이 공정하게 輸出했다 할지라도 미국내 產業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는 점과 해당 물품의 모든 輸出國에게 무차별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反dumping 關稅와는 크게 다르다.<sup>18)</sup>

美國의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의한 輸入救濟節次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참조>

14) 李 均, 關稅理論, 法經社, 1993,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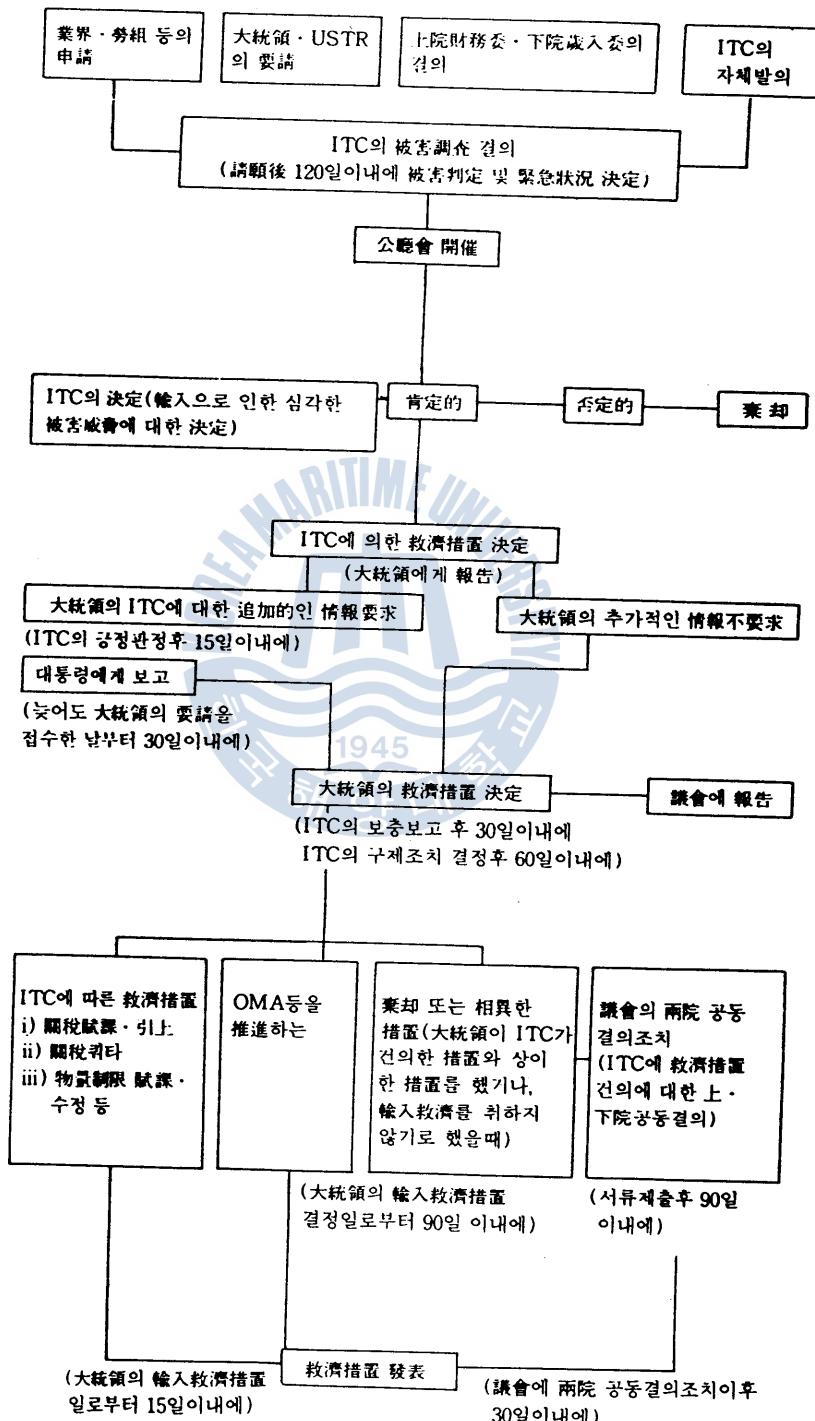
15) 申鉉種, 前揭書, pp. 494~498.

16) 申鉉種, 前揭書, pp. 500~504.

17)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Uruguay Round, GATT Doc. No. GATT/MIN. DEC 86~1572.

18) 蔡 旭, 前揭書, pp. 30~31.

〈그림-2〉 美國의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의한 輸入救濟節次



## 2. 一方的 規制措置 (通商法 301條 中心)

### (1) 通商法 301條의 意義

국제적으로公正貿易과 不公正貿易을 판정하는 客觀的 基準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美國은 不公正貿易을 주관적으로 판단, 通商法 301條 등에 구체적으로 提示하여 一方的 輸入規制措置의 근거로 삼고 있다.<sup>19)</sup>

원래 301條는 外國政府의 慣行 등이 美國通商利益에 장애가 되거나 國際通商規範을 위반하여 不公正 또는 不當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大統領令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301條의 發動이 지나치게 자제되어 왔다는 미국내의 여론의 비판과 美國議會의 保護貿易主義의 분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1980年代 후반에 들어와서 美國 行政府는 활발히 301條를 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發動이 단순히 관련업체의 청원에 따른 수동적인 것에서 청원이 없어도 大統領이나 美國貿易代表部(U.S Trade Representative : USTR)가 職權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能動的인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sup>20)</sup> 뿐만 아니라 1988年 綜合貿易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 : OTCA)의 제정으로 매우 광범위한 外國의 貿易制度와 慣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슈퍼 301條 등 일련의 特別措置를 통하여 일방적이고 강력한 報復措置를 強化하였다.<sup>21)</sup>

그러므로, 오늘날 美國의 對外通商規制政策의 초점이 301條의 발동범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고 할 만큼, 301條는 美國의 通商規制의 中心이 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通商法 301條는 市場開放을 지향하는 한 貿易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차별적으로 發動하는 것은 對外貿易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貿易이 축소되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 (2) 레귤러 301條(Regular 301條)

1974년 通商法 301條에서 309條까지는 美國의 通商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외국의 貿易慣行에 대하여 그 배제를 목적으로 對抗措置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조항이다. 이들 조항을 一括하여 通商法 301條(Regular 301條)로 부르고 있다.<sup>22)</sup>

19) 朴鐘秀, “UR 以後 美國 通商政策의 論理와 運用方向에 관한 考察”, 「仲裁 10月號」, 대한상사중재원, pp. 17~19.

20) 徐憲濟, 「通商問題와 法」, 융곡출판사, 1994, pp. 127~128.

21) 富士綜合研究所, クリントン 政権の通商政策, 1993, pp. 20~23.

22) 金載益, 美國 通商政策의 現況과 展望, 韓國產業銀行, 產業研究, 1993, p. 12.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301條가 개정되어 업계의 提訴 없이도 USTR의 職權에 의해 조사 및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권한이 한 층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調査開始 및 報復措置의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USTR로 이전되었고, USTR의 보복조치가 의무화되었으며 不公正慣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협의절차 진행의 신속화를 위해 외국의 不公正貿易慣行을 제거하기 위한 협의기간도 5개월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301條가 강화된 배경으로는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對抗措置의 發動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議會가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USTR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항조치의 결정권한이 USTR에 위양됨으로써 대통령은 대항조치의 발동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 슈퍼 301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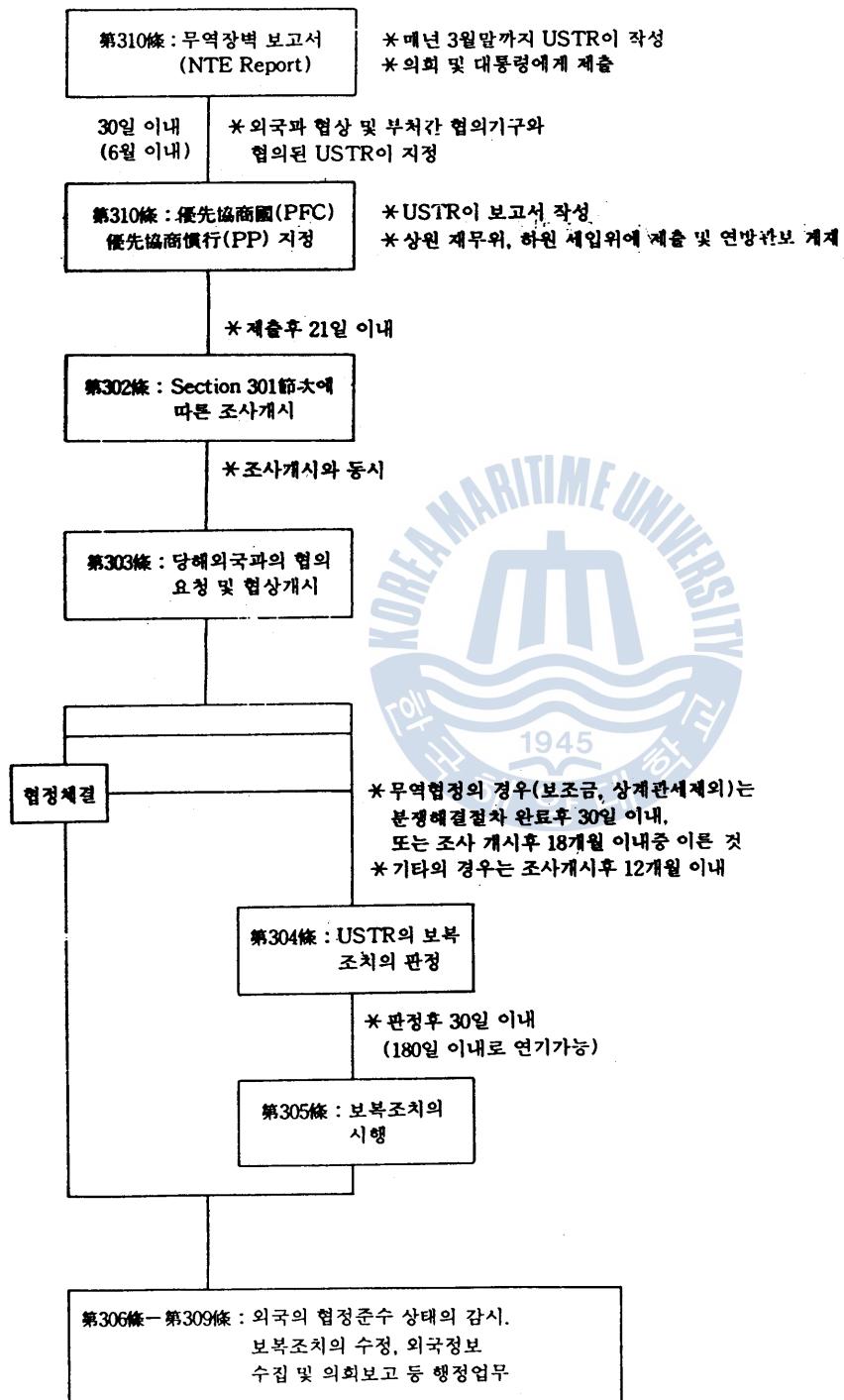
슈퍼 301條(Super 301條)는 1988年 綜合貿易法 1302조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통상법 301條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즉, 슈퍼 301條는 주요 交易相對國의 通商關聯法이나 政策 및 慣行을 매년 검토하여 美國에 대해 不公正한 貿易慣行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선정하여 USTR이 이들과 協商을 하여 不公正 貿易慣行을 제거하도록 貿易協定을 체결하거나 또는 강력한 貿易報復措置를 취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는 美國 通商法上の 조항을 말한다.

슈퍼 301條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부활되었다.

슈퍼 301條에 따르면 USTR은 매년 부처간 협의기구의 지원을 받아 외국의 不公正 貿易行爲를 분석·평가한 貿易障壁과 慣行에 관한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NTE)를 대통령과 上院 재무위원회 및 下院 세입위원회에 제출한다. 무역장벽보고서(NTE)가 의회에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과 우선협상대상관행(Priority Foreign Practice : PFP)을 지정하여 통보고서를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하고 연방판보에 게재 공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NTE보고서가 제출된 후 USTR은 21일 이내에 우선협상국별 우선협상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調査가 개시됨과 동시에 USTR은 해당국가에 협의를 요청하고 貿易協商을 개시한다. 貿易協定에 관련된 兩國間 협의와 조사는 紛爭解決節次가 완료된 후 30일 또는 조사 개시후 18개월이 되는 날 중 이를 기간을 택하여 판정을 한다. 한편 기타의 경우는 조사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판정한다.<그림-3 참조>

〈그림-3〉 슈퍼 301條 節次



外國의 不公正貿易慣行이 판정되면 이 판정에 따른 報復措置를 판정일 후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단, 180일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USTR은 相對國이 美國의 규정에 일치하거나 不公正 貿易行爲를 제거하는지 등의 이행상태를 감시한다. 외국이 이행하여 措置를 취하면 USTR은 報復措置를 일단락 짓게 된다.

#### (4) 스페셜 301條

스페셜 301條는 1988년에 종합무역법 1303條에 의해 개정된 1974년 통상법 182조를 말하는 것으로, 知的財產權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知的財產權保護에 의존하고 있는 美國人에 대한 市場接近의 公正하고 타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극악한 行爲, 政策, 慣行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EC)로 지정하여 301條 節次를 시행하게 하는 조항이다.<sup>23)</sup>

스페셜 301條가 슈퍼 301조와 다른 점은 첫째 슈퍼 301조가 모든 貿易障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스페셜 301조는 知的財產權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둘째 슈퍼 301조가 원래 1989년과 1990년 등 2년에 걸쳐 시행되도록 한 限時法임에 반하여 스페셜 301조는 限時法이 아니며, 셋째 슈퍼 301조는 지정철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스페셜 301조의 제반 절차는 슈퍼 301조와 비슷하나 보다 신속히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규정에 의하여 美國은 自國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국(PEC), 우선 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PWL), 관찰대상국(Watch List : WL)을 분류 지정하게 된다.<sup>24)</sup> 그후 相對國의 개선정도와 개선약속을 매년 再檢討함으로써 指定을 완전히 철회하거나 등급을 낮추거나 혹은 새로이 추가 지정하게 된다. <표-1 참조>

#### (5) 美國 通商法 301條 관련 行政命令

本 行政命令은 통상법 301조 집행에 관한 大統領行政命令(executive order)으로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攻勢的 通商政策을 펴겠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선거공약에 따라 1994년 3월 3일 발령되었다.

이 行政命令의 주된 공격목표는 日本이나 既存의 슈퍼 301조와는 달리 특정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發動이 신축적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로 발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 이 많다고 할 수 있다.前述한 바와 같이 301조의 대상은 不公正貿易 즉, ① 미국의 通商에 부담을 주거나 規制를 가하는 法·政策·慣行, ② 不當한(unjustifiable) 法·政策·慣行,

23) 法務部, UR協定의 法的考察(上), 1994, p. 616.

24) 1993년 4월 USTR은 스페셜 301조의 분류를 강화하여 기존의 PFC 이외에 PWL를 즉시 이행 PWL, 수시점검 PWL, 일반 PWL로, WL를 수시점검 WL, 일반 WL로 세분화 하였다.

③ 不合理한(unreasonable) 法·政策·慣行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利益을 侵害하고 있는 慣行이 있다면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다 과감하고 능동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반면에 美國과의 通商協商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여 나쁜 先例를 남기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정하여 협상해야 할 것이다. 向後 美國의 지나친 통상압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선된 制度와 慣行 등을 적극 弘報하여 美國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美國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양면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1〉 通商法 301條의 주요내용 비교

	일 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 퍼 301조	대 통령 행정명령
근거명령	1979년 통상법	1988년 종합무역법	좌 동	1994.3.3. 대통령 행정명령
적용대상	특정불공정 교역 행위, 정책, 관행	지적소유권분야의 불공정행위, 정책, 관행	특정국가의 불공정행위, 정책, 관행 전부	특정국가의 특정 불공정교역 관행
지정의 종류	지정 없음	감시대상국-Watch List,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가의 특정관행-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
적용기간	1974년 이후	1988년 이후, 실제 적용은 1989년 이후	1989년, 1990년	1994년, 1995년
발동절차에 관한 사항	매년 3.31.이전에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s) 제출	NTE 제출후 30일 이내에 PFC 지정, 지정후 21일 이내 조사개시	좌 동	NTE제출후 6개월 이내 PFCP 지정, 기타의 점은 좌동

## IV. 美國 通商政策의 展望

클린턴行政府는 出帆 당시 自由貿易을 표방하면서 公正貿易을 유달리 강조해 왔으며 自國 產業의 競爭力 提高를 對外政策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천명하여 왔다. 이와 같은 클린턴行政府의 의지는 交易相對國의 市場開放과 美國 企業의 公正한 競爭力確保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美國은 GATT協定과 其他 國際 規範 및 多者間貿易協定 그리고 國內 通商法의 活用을 통해 그와 같은 自國의 目標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例로서 신속한 U·R協商의 타결과 NAFTA의 基本協定文 外에 環境保護, 勞動基準, 輸入急增防止에 관한 별도의 補完協定을 추진하고 있고, APEC會談을 각료회담에서 頂上會談으로 승격시키면서까지 아·태지역에서의 美國立地強化와 EU와 日本經濟의 부상은 경제협력을 위하여 美國은 적극성을 보여 왔다.

### 1. U·R 妥結에 따른 通商政策의 展望

#### (1) U·R 妥結의 意義

금번 U·R協商은 1947년 GATT體制 성립이후 8차례 가졌던 어느 라운드보다도 광범위한 協商이었다. 전통적인 工產品의 間稅引上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교역의 自由化, 外國人投資 등 새로운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U·R協商의 妥結로 이제 세계는 各國의 市場開放 폭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하나의 地球村化되고 있으며, 이른바 21세기의 無限競爭時代가 도래하고 있다.<sup>25)</sup>

또한 이번 U·R 에서는 WTO가 포괄하는 대상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이는 80년대 이후 國際分業構造가 크게 변화하면서 先進國을 中心으로 한 新技術의 개발과 함께 經濟의 서비스化,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된 데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GATT가 世界貿易을 유효하게 규율하는 包括的 體制로 발전하기 위하여 商品貿易에 찬존하는 무역장벽 외에도 서비스, 直接投資 및 知的財產權 등 광범위한 分野를 포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U·R에서는 GATT의 多國間 交涉原則에 기초하면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合意가 이루어졌다.<sup>26)</sup>

25) U·R 총점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p. 19~21.

26) 大宇經濟研究所,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韓國經濟新聞社, 1994, p. 12.

## (2) U·R妥結과 美國 通商政策의 展望

U·R協商은 美國의 立場에서 보면 출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通商政策의 實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ATT體制의 기능 약화를 방지하고, 國際貿易에 있어서 自由貿易의 原理가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루과이아운드協商 出帆의 배경을 이해하고 主要協商結果를 美國의 立場에서 평가해 보는 것이 향후 美國의 通商政策을 가늠하는 데 필요하다.

U·R協商의 주요 특징이 주로 美國이 우월한 競爭力を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및 知的財產權 등 이른바 新分野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작성과 農產物分野의 交易自由化라는 점은 미국이 多者間協商을 통하여 輸出增大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向後 美國의 通商政策은 종래의 자유방임적 성격에서 벗어나 輸出促進에 치중하게 될 것임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이같은 예상은 지난 1993년 9월 미국의 貿易促進委員會(Trade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앞으로는 '輸出 없이는 成長도 尋備의 創出도 없다'라고 선언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본 委員會 報告書의 主要內容은 미국의 輸出促進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向後 美國의 通商政策 方向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通商政策은 비교적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政策基調의 변화는 이른바 新產業政策의 일환으로서 產業 및 貿易政策에 政府가 일정한介入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0年代 以後 등장한 이른바 '新貿易理論(New Trade Theory)'는 단순한 自由貿易 추구의 政策보다는 產業別特性에 따라서는 일정한 개입을 부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U·R協商에 있어서의 知的財產權의 保護強化는 美國이 競爭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尖端製品의 輸出을 위한 政府의 간접적인 補助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輸出補助 = 輸入保護'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多者間 貿易協商을 통한 美國產業의 輸出環境改善은 곧 바로 產業을 보호한다는 意味와 직결되는 것이며 다만 정부지원의 형태가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간접적인 지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VER 및 MFA의 철폐 등 灰色地帶措置를 완화하고, Safeguard 反dump 및 相計關稅 등 GATT規定의 남용을 제한한 것은 先進國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WTO에서 貿易紛爭의 解決節次가 강화된 것은 특히 美國의 一方的 輸入制限措置를 상당히 제약할 것이다.

## 2. APEC 形成에 따른 通商政策의 展望

### (1) APEC의 意義

世界人口의 40%, 國民總生產의 50%, 世界貿易의 40%를 차지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經濟 및 政治的인 규모에서 世界 最大의 經濟圈域이다. 이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리적으로 광활하며 經濟構造와 經濟發展 단계가 매우 상이하여 域內國家間에 人種的·文化的·歷史的으로 多樣性을 지니고 있다.<sup>27)</sup> 이러한 異質性에도 불구하고 이 地域에서 日本, ANICS, 中國 및 ASEAN 國家들이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太平洋經濟圈은 世界經濟의 성장축으로 浮上하게 되면서 域內國間의 經濟協力體 必要性을 認識하게 되었다. 태동 이후 줄곧 국가간의 技術移轉 등의 經濟協力方案 論議에 그치던 APEC의 성격은 3차·4차 회의를 거치면서 그 역할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3年 11月의 第5次 시애틀회담은 美國에 의해 주창된 '新太平洋共同體' 구성을 지향하려는 美國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論議가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

각료회의에서는 EPG(저명인사그룹)가 제출한 "APEC의 長期비전 - 亞·太經濟共同體 구축에 관하여"라는 보고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APEC을 경제 공동체로 시급히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96년 중으로 經濟共同體 실현을 위한 목표시기와 일정을 마련한다는 저명인사그룹의 提案은 ASEAN 등 開途國의 반대로 채택이 유보되었지만 域內 貿易 및 投資自由化(TIF)와 이를 위한 貿易投資委員會(CTI)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APEC이 실행력을 갖춘 역내 기구로의 성공적인 성격전환을 시작했다는데 그意義가 있다.

시애틀會談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美國이 의도한 바가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는 APEC이 AFTA, ASEAN, NAFTA 등 역내 혹은 관련 小經濟블럭과의 명확한 관계나 입장을 정립해야 하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또한 U·R의 妥結과 함께 구체적인 기구의 성격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 (2) APEC에서의 美國通商政策의 展望

美國은 지난 11月의 APEC를 시애틀에서 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A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아시아시장의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APEC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政治·經濟的 目標를 달성하고자 하며 또 상당부분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美國은 아시아地域의 능동적인 經濟成長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침체된 國內產業을活性화하고 輸出振作을 통한 고용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7) 朴敬銘, 아시아·태평洋經濟協力體(APEC)에 관한 小考, 東亞大學校「經營研究」第7號, 1993, p. 103.

둘째, 美國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協商力を 높였다. APEC의 經濟圈域의 성공적인 구성으로 주요 협상상대인 EC와의 협상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으며 협상실패시 EC에 대응하는 경제 Bloc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EC로 하여금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번 U·R의 타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主要 交易國인 아시아국들과의 通商懸案 論議를 多者間次元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日本, 韓國, 中國, ASEAN 등 交易比重이 커지고 있는 國家들과의 雙務的인 協議는 各國別로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등 중복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그 실효성과 적합성에서 문제점을 표출해 온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多者間論議의 난항시에는 쌍무적인 협상을 통한 活路摸索의 여지 또한 남아 있다는 점에서 APEC은 美國의 對아시아 通商協議戰略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經濟, 安保, 政治의 주도권을 행사해 온 美國으로서는 APEC을 통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 입지를 강화할 必要性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기존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큰 輸出市場의 확보에서 배제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 3. NAFTA의 結成에 따른 通商政策의 展望

#### (1) NAFTA의 意義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sup>28)</sup>은 美國의 資本과 技術, 캐나다의 資源과 技術 그리고 멕시코의 값싸고 풍부한 勞動力이 結合하는 世界 最大의 單一市場을 지향하고 있다. EC가 域內 國間의 經濟發展程度가 거의 비슷하고 경제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는 水平的 統合인데 반하여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垂直的 통합으로 두 經濟圈間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北美自由貿易市場은 국내총생산(GDP)이 92年 기준으로 6조 7,700억 달러로 EC의 6조 8,400억 달러에 약간 못미치나 인구는 3억 6,000만명으로 EC의 3억 4,300만명보다 많으며 교역규모로 2,700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2) NAFTA에서의 美國 通商政策의 展望

NAFTA定文의 內容을 보면 ① 向後 15年間에 걸쳐 3國間의 모든 關稅를 철폐하며 ② 農

28) 朴敬銘, “北美自由貿易協定 妥結이 韓國의 對美輸出에 미치는 영향”, 東亞大學校, 「經營研究所」第6號, 1992, pp. 128~129.

業, 에너지, 金融 등 各分野의 市場을 開放하고 ③ 3國間 投資를 自由化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주요 農產物의 關稅를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投資와 관련하여서 멕시코는 自國產部品의 의무적 사용규정을 폐지하고 멕시코內의 美國企業은 內國民待遇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雙務協商이나 多者間協商보다 知的財產權保護를 강화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일본, 유럽 등 競爭國으로부터 自由貿易의 모범국이던 美國이 經濟保護主義로의 진로전환을 시작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NAFTA의 結成은 美國의 通商政策의 強化手段으로一方的規制措置가 더욱 強化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NAFTA의 통과가 世界貿易秩序의 재편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다. 즉 NAFTA의 추진의도가 원래 새 행정부의 對外政策基調인 '經濟安保'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EC에 대응할 체제를 갖추고 이에 더하여 美國產業의 경쟁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던 만큼, 第1位 交易國인 캐나다와 第3位 交易國 멕시코를 하나의 경제우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미국은 당장 U·R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NAFTA도 自由貿易主義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北美市場내에서의 勞動과 商品의 自由移動에 비하여 外國企業들에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서 NAFTA로 인한 世界經濟의 Bloc化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에 반하여 NAFTA는 自由貿易體制의 확립을 위한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하여 保護貿易主義의 추세를 완화시키고 U·R의 타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NAFTA 규정상에 보면 앞으로 15년 안에는 모든 貿易과 投資制限 규정들이 철폐될 것이 천명되어 있다.

이에 따라 美國企業들은 勞動集約의이고 高度技術의 필요치 않은 업종은 멕시코로 옮기고尖端技術業種 및 金融, 通信 서비스 등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美國產業의合理화와 競爭力を 提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美國의 通商政策의 수단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부문을 中心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 V. 結論

클린턴行政府는 출범 당시 自由貿易을 표방하면서公正貿易을 유달리 강조해 왔으며, 國內產業의 競爭力提高를 최우선 經濟政策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즉,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支援을 통해서라도 生產性을 향상시키는 한편 海外輸出市場의 유지와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不公正한 貿易慣行을 유지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강경한 通商政策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본다면 美國의 通商政策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基調로 가시화되고 구체화 될 것이다.

첫째, 美國은 多者間 規範에 근거한 通商壓力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즉 美國은 U·R協商의 타결에 따라 개방수준이 多者間 體制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強力한 通商壓力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結果가 美國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자국의 通商法을 적용하여 그의 시정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둘째, 美國은 地域間 協定에 의한 貿易 및 投資 擴大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는 域內市場의 확대에 의한 規模의 經濟實現, 企業間 競爭의 촉진에 의한 비효율의 제거, 資本·技術·資源·勞動力의 보완적인 결합으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貿易 및 投資의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U·R協商의 타결로 인하여 그 의미는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나, 美國은 그와 같은 지역주도의 貿易自由化 추진이 多者間體制下의 무역자유화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美國은 貿易協定의 위반 혹은 不公正慣行에 대한 通商法 301條의 活用을 강화할 것이 짐작된다. U·R協定文에서는 일방적 제재조치의 발동을 억제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美國은 通商法 301條가 반드시 多者間 規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措置의 活用 可能性이 매우 높다. 특히 知的財產權 保護, 金融 및 通信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위한一方制裁 措置의 活用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넷째, 美國은 國際環境協約의 이행을 위한 貿易措置에서 더 나아가 環境保護費用을 감안하지 않은 수출촉진을 방지하기 위한 貿易措置의 발동을 강화할 것이다. 環境保護問題를 貿易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려는 美國의 의도는 NAFTA協商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美國이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의 발동이나 相計關稅의 부과 등을 自國產業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金煉錫, 美國貿易의 政治經濟學과 韓國의 대응방안, 韓國經濟연구원, (1988).
- 金正會, 美國 通商政策의 霸權論의 接近, 國際貿易研究所, (1994).
- 金載益, 美國 通商政策의 現況과 展望, 韓國產業銀行, 產業研究所, (1993).
- 盧承一, 美國의 通商關稅法 解說, 產業研究院, (1985).
- 盧永旭, 美國의 通商政策方向과 我們의 對應方案, 「關稅」 6月, 韓國關稅研究所, (1993).
- 大宇經濟研究所, 우루과이라운드와 韓國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94).

- 朴鐘秀, “UR 以後 美國 通商政策의 論理와 運用方向에 관한 考察”, 「仲裁 10月號」, 대한상사중재원.
- 朴敬銘,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에 관한 小考, 東亞大學校「經營研究」 第7號, (1993).
- \_\_\_\_\_, 北美自由貿易協定 妥結の 韓國의 對美輸出에 미치는 영향, 東亞大學校, 「經營研究所」 第6號, 1992, pp. 128~129.
- 法務部, UR協定의 法的考察(上), (1994).
- 富士綜合研究所, クリントン 政權の通商政策, (1993).
- 產業研究院, KIET 通商白書, 서울, (1988. 7).
- 產業研究院, 21세기 世界貿易經營戰略, KIET 연구보고서, (1994).
- 徐憲濟, 「通商問題와 法」, 윤곡출판사, (1994).
- 申鉉種, 貿易政策論, 博英社, (1993).
- 梁喨換·吳元奭, 貿易商務論, 法文社, (1993).
- 李 均, 關稅理論, 法經社, (1993).
- 張石煥, WTO時代와 우리의 대응, 「關稅」 3月, 韓國關稅研究所, (1994).
- 蔡 旭, 美國의 新通商政策과 企業의 對應方案, 大韓商工會議所, (1994).
- U·R 총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Uruguay Round, GATT Doc. No. GATT/MIN. DEC 86~1572.
- 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X VI and X XIII of the GATT, H. R. Doc. No. 96~153, Part 1 96th Cong. 1st Sess 257 (1979).
- W. R. Cline, "Reciprocity : A New Approach to World Trade for Int'l Economics," Washington, (1983).

